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강원지역)

2019. 4. 24(수) 14: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홀

- 1부 -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유의사항(청탁금지제도과)
- 2부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설명자료(심사기획과)
- 부파·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처리방법(보호보상정책과)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강원지역)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등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제도 운영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입체적으로 전달
- 법 적용대상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함으로써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 및 교감 강화
※ 강원권, 호남권·제주,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소재 기관 대상 개최 예정(4~6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9. 4. 24.(수), 14: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홀
- 참석대상 : 강원지역 공공기관 등 청탁방지담당관, 청렴업무 담당자 등 교육 참석 희망자
- 주요내용 : 청탁금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신고처리 관련 유의 사항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5:00 60'	청탁금지제도(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등) 및 신고처리 관련 사항	청탁금지제도과
15:00 ~ 15:20 20'	질의응답, 의견청취	"

※워크숍 이후 심사보호국 주관 교육 예정

□ 행정사항

- 상시학습 : 참석자 2시간 인정(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권역별 설명회(강원지역) 개최 알림

□ 추진배경

- 1단계 국가청렴정보시스템('19. 3. 18. 구축 완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 구축사업(공공기관 표준 신고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신고제도 운영 불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사용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한 것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기관 참석자들의 편의 도모※ 호남권·제주, 영남권, 수도권 기관 대상 개최 예정(5~6월)

□ 행사개요

- 일시 · 장소 : '19. 4. 24.(수), 15:3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홀
- 참석대상 : 강원지역 공공기관의 청렴 업무 담당자 등 교육 참석 희망자
- 주요내용 : 1단계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2단계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 설명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5:30~15:50 20'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공공기관 표준 신고관리 시스템 도입) 구축 관련 사항	심사기획과
16:10~16:30 20'	질의응답, 의견청취	"

□ 행정사항

- 상시학습 : 참석자 2시간 인정(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신고자 보호강화’ 를 위한 민원업무 담당자 권역별 교육

□ 추진배경

☞ 신고성 민원 주요 처리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등
일선기관 민원담당자 대상 권역별 교육 추진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고성 민원’이 일반민원과 구분없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
 - ※ 신고성 민원 : 각종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민원
- 신고성 민원의 경우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 유출’ 등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
- 민원담당자 대상 신고성 민원 처리 유의사항 및 신고자 보호법령 교육을 통해 신고자 신분 비밀보호 제고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신고성 민원 빈발부서 민원처리 담당자
 - * 신고성 민원 빈발부서 : ①도로·교통·건축 ②건강·식품 ③보건의료·위생 ④교육·보육 ⑤복지·사회서비스 ⑥환경 ⑦공정·소비자(하도급법, 공정 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관련부서)
- 일 시 : 4. 24.(수), 14:00 ~ 16:00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대강당
 -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소재(약도 참고)

< 강원권역 기관유형별 교육대상 기관 >

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23개	1	1	18	1	2

* 국방부 추가

○ 주요 교육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주요 내용
- 일반민원과 신고성 민원의 차이
 - ※ 공익신고 요건 : ①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⑤ 공익침해행위 증거
- 신고성 민원이 공익·부패신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유의사항
(신고성 민원 접수·처리 방법)
 - 신고(민원) 처리 시 신고자·피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사항
 - 신고사건 이송 시 신고자 동의 절차
 - 보호규정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등
-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 업무담당자에 의한 신고자 정보 노출 및 처벌사례, Q&A 등

○ 진행순서

-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 인사말 → 신고성 민원처리 유의사항 등 담당자 교육 →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 폐회

□ 협조사항

- 각 기관별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 4. 15.)
 -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경우 “신고성 민원 빈발부서 민원처리 담당자” 등 3명이상 참석 요청
 - ※ 신고성 민원 빈발부서가 없는 경우 민원 접수·처리 담당자 등 참석
-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주관하는 ‘청탁 방지 담당관 교육’과 병행하여 개최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불임

행사장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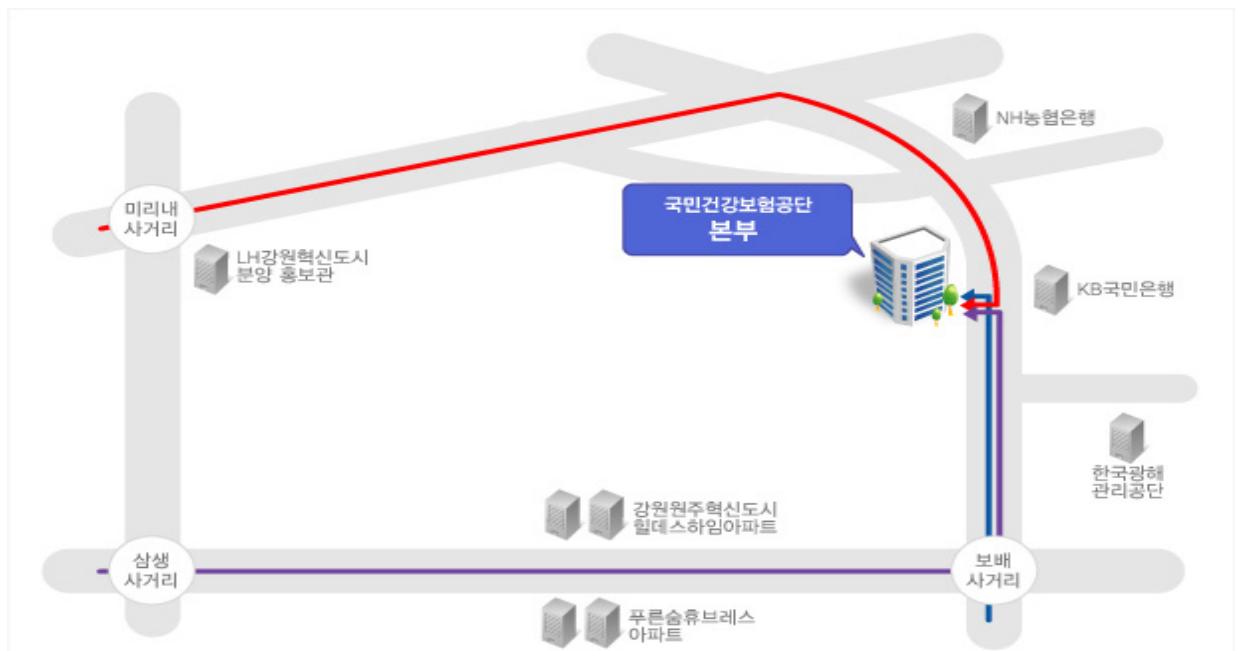
□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층 건강홀

○ 대중교통 : 반곡역에서 도보 20분

※ 주차권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약도





+ 목차 +

- ❖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유의사항 … 1
-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설명자료 35
-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Q&A 47
- ❖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처리방법 63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강원지역)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유의사항

2019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강원지역)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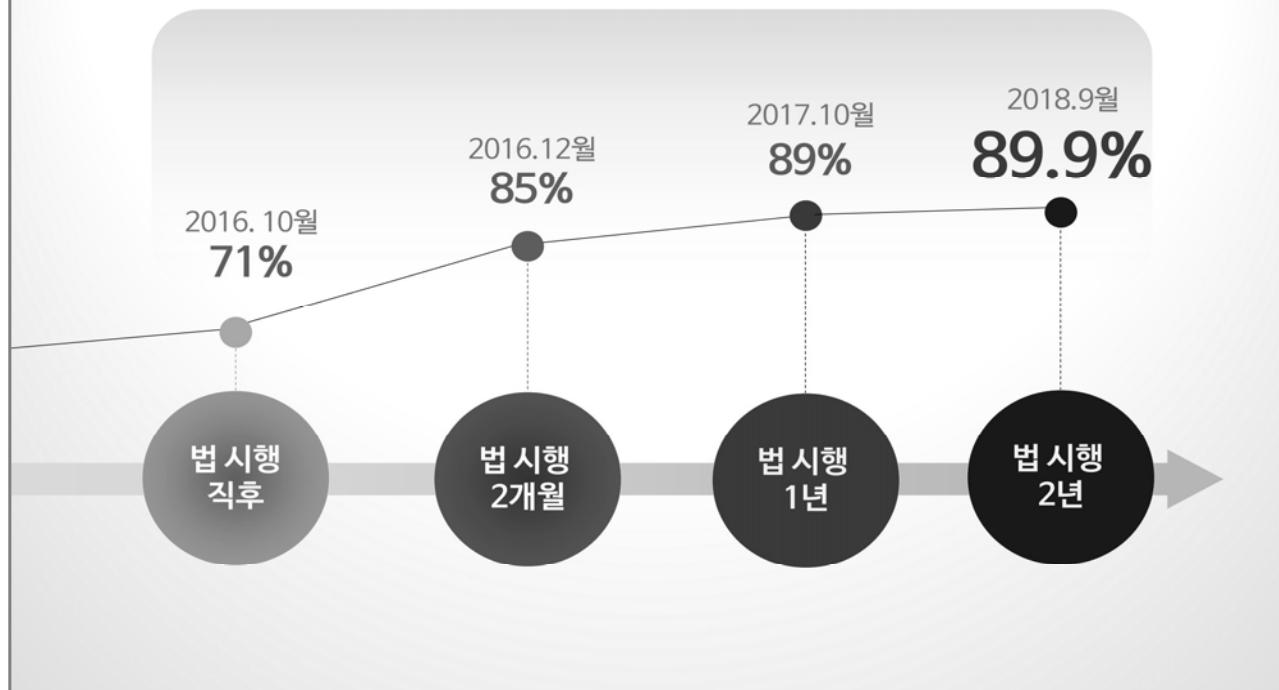


청탁금지법과 우리 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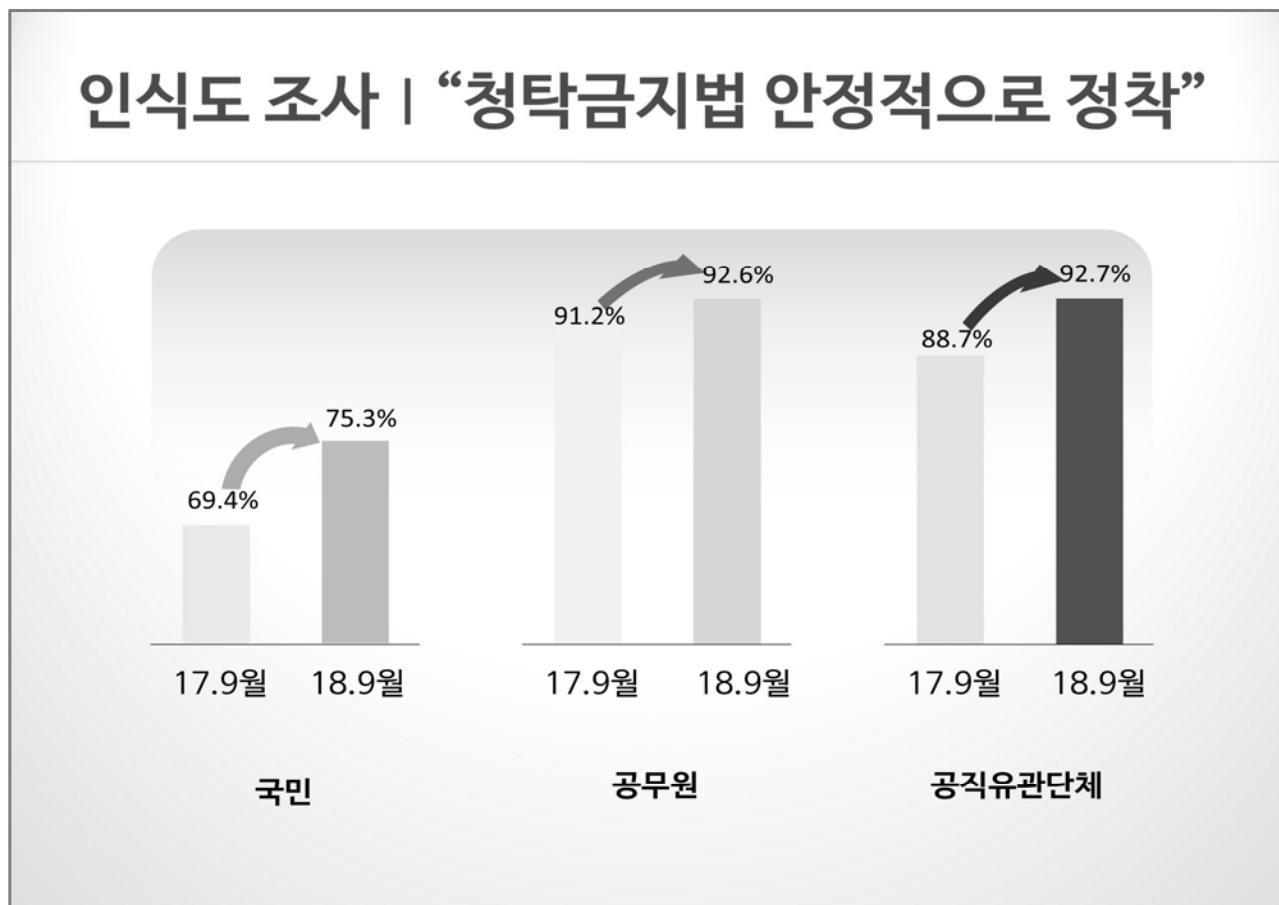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인식도 조사 |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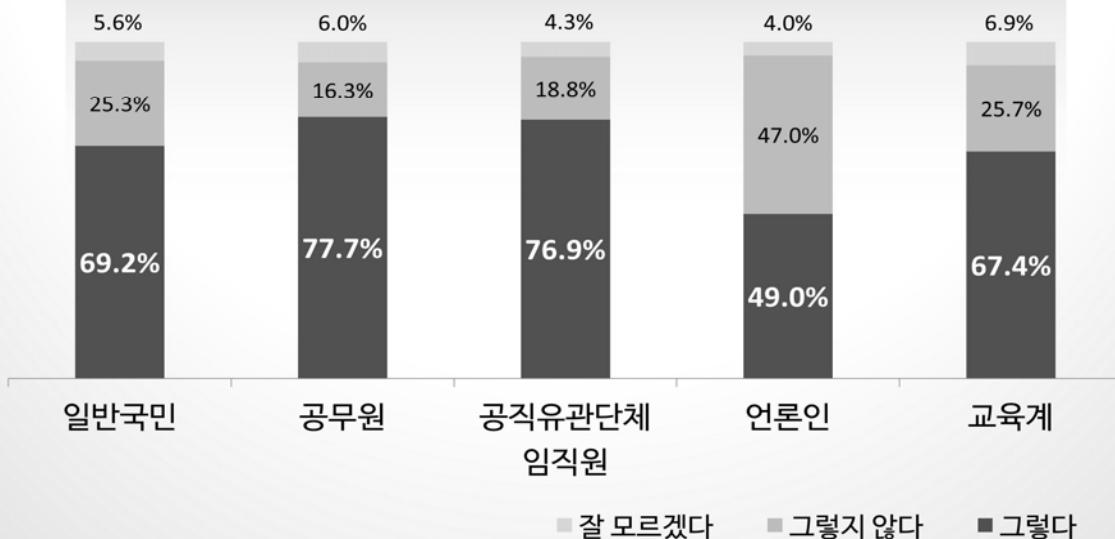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청탁금지법 안정적으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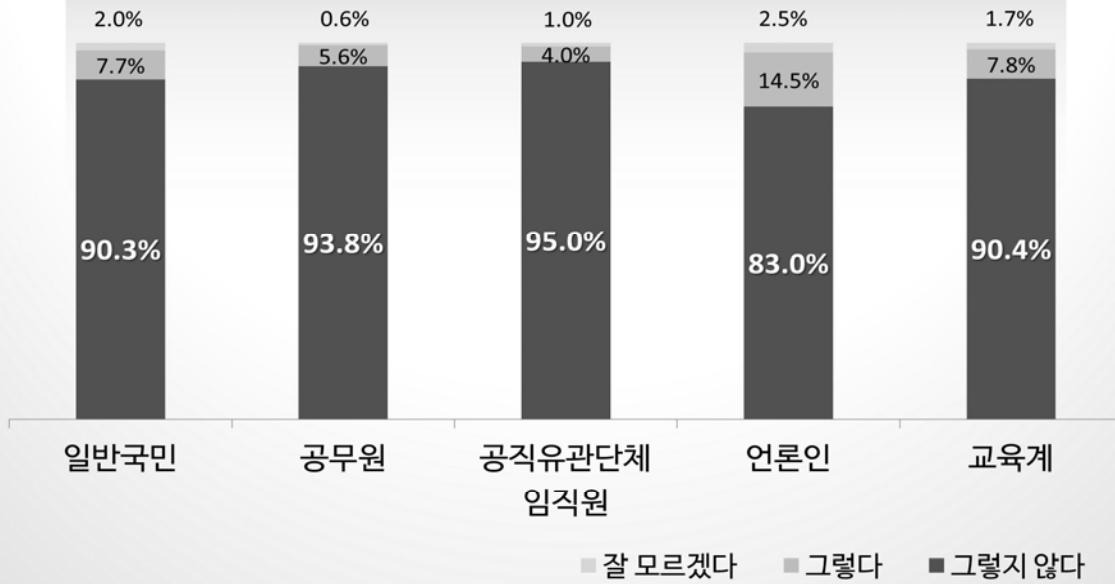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하는 것이 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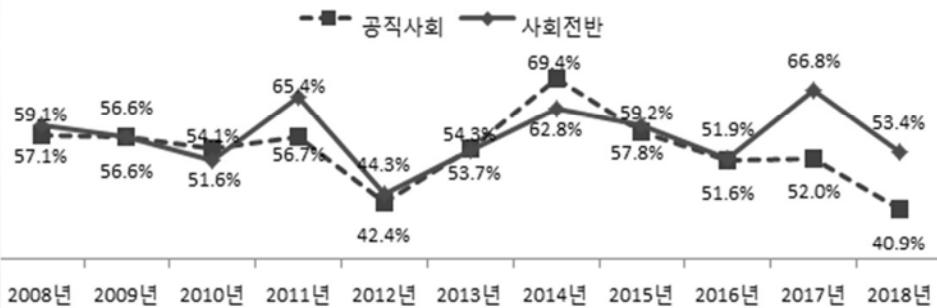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사회생활, 업무수행에의 지장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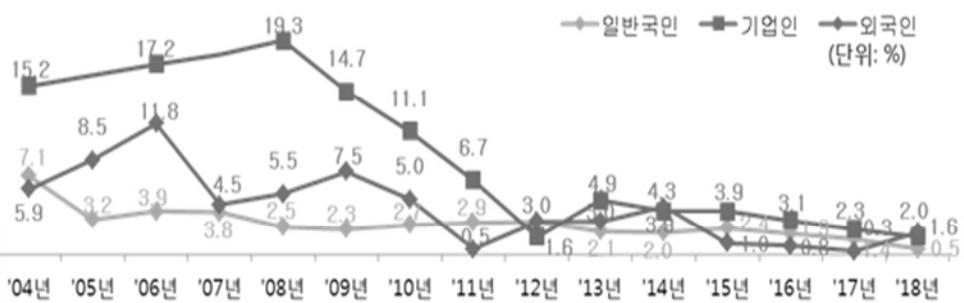
부패 인식도 조사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

’17년 66.8% → ’18년 53.4%로 감소



부패 인식도 조사 | “부패제공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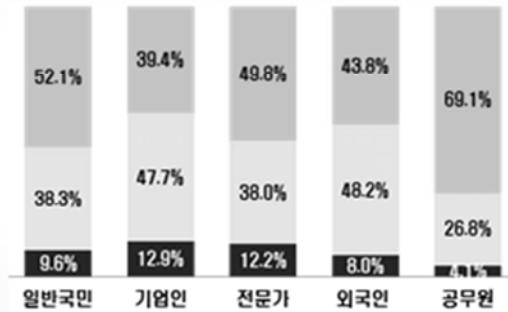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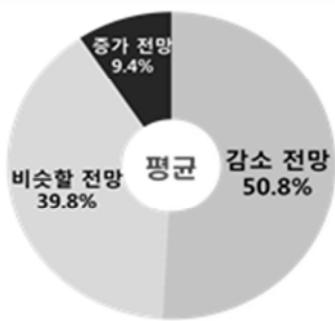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2%이하)



부패 인식도 조사 | “부패에 대한 전망”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국민 다수 전망

※ 일반국민의 경우, 긍정적 전망(52.1%)이 부정적 전망(9.6%)
보다 월등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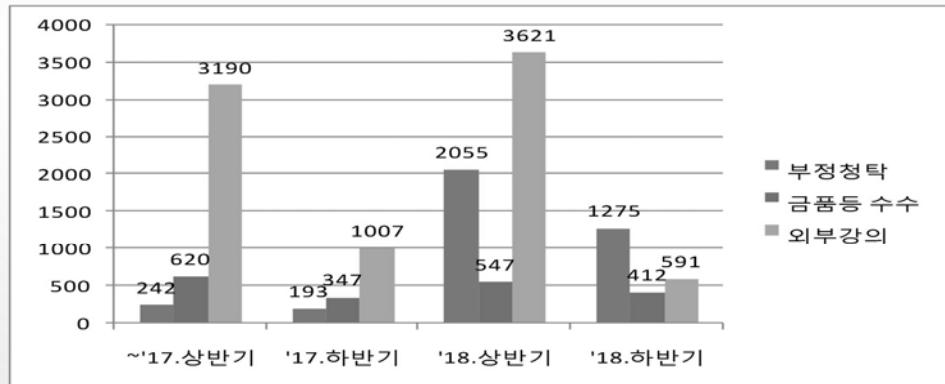
법주요내용 및 제도운영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처리 현황 분석 | 시기별 신고 접수 현황

- 부정청탁 3,765건, 금품등 수수 1,926건, 외부강의등 8,409건
- '18년 상반기 부정청탁 신고 크게 증가(채용비리 특별 점검)
- 금품등 수수 신고 중심 → 부정청탁 신고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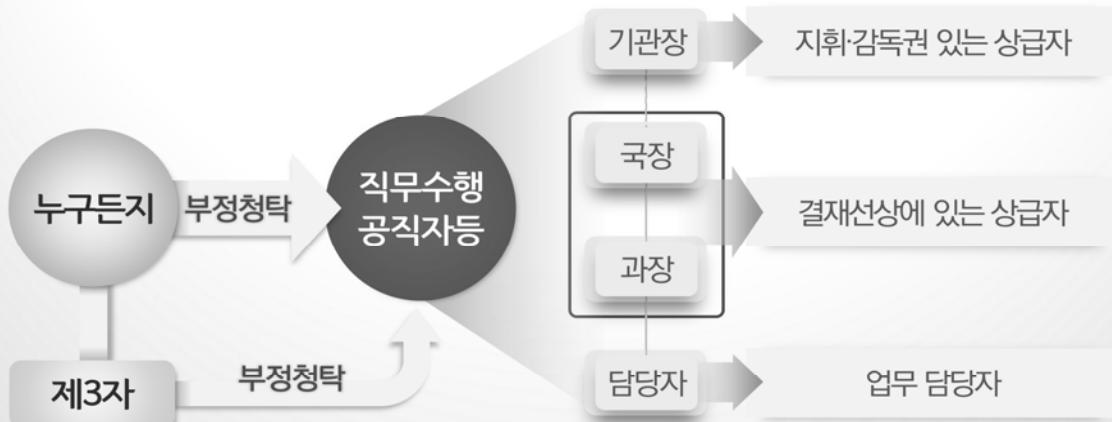
신고 처리 현황 분석 | 각급 기관 신고처리 현황

-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조사 중인 신고 3,589건
-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요청 등 제재 절차 진행 527건
- 형사처벌, 징계 등 제재 확정 181건

구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계
수사중, 과태료 재판 중	68	277	1	346
제재 확정(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9	167	5	181
합계	77	444	6	527

유형별 분석 | 부정청탁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제5조제1항)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 | | | | |
|----|---------------------------------|----|-----------------------------|
| 1 | 인가·허가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 3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 11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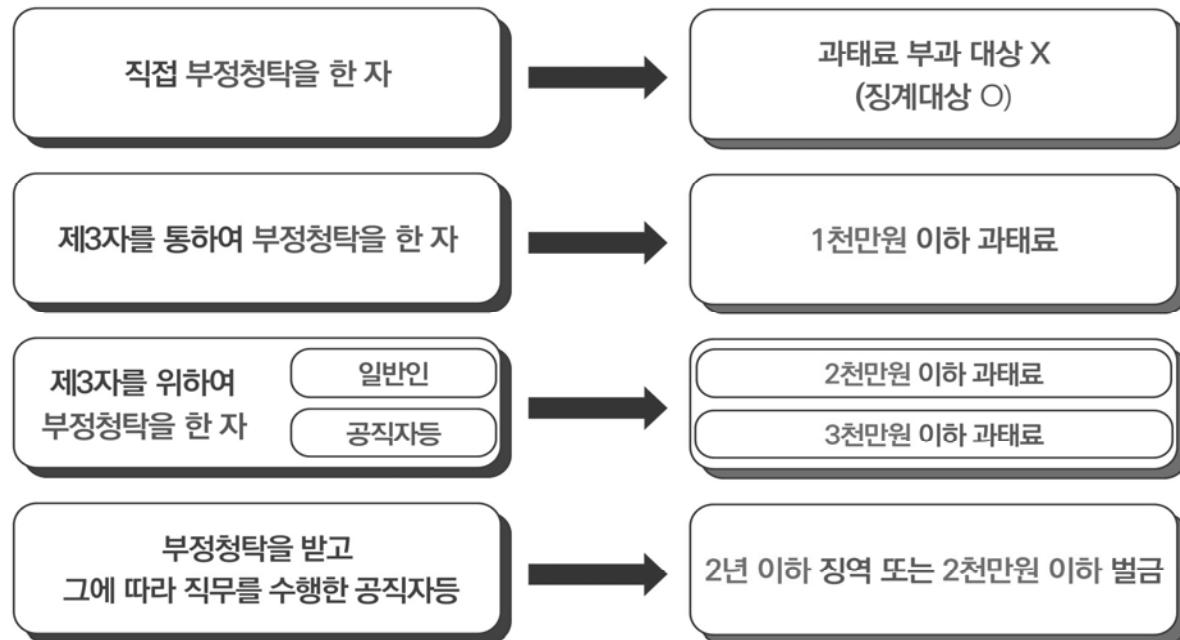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유형별 분석 | 부정청탁 금지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3,765건,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의뢰 77건, 제재 확정 9건

관련 사례

개요	경찰채용시험을 치른 자녀가 경찰인 부모를 통해 시험 감독자 2인에 답안지 보완 기회를 청탁하여 시험장에 재입실 후 답안지를 새로 작성
제재	자녀 : 과태료 300만원, 부모 : 과태료 800만원, 시험감독자 2인 : 벌금 각 200만원
개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을 특정 부서로 전보해달라고 청탁
제재	청탁자 : 과태료 300만원, 인사담당자 : 면제(청탁 거절)

개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학부모의 입학 청탁을 받고 특정 아동의 정원 외 입학을 실시
제재	학부모 : 과태료 500만원, 교장 : 벌금 700만원, 교감 : 벌금 500만원

부정청탁 | 판례

인정 사실

- 공직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내용 : 공무원이 본인의 승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하는 문자메세지를 제3자에게 전송

판 단

- 제3자를 통한 청탁 행위가 인정되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유형별 분석 | 부정청탁 금지

- (직무 배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일시정지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례 7건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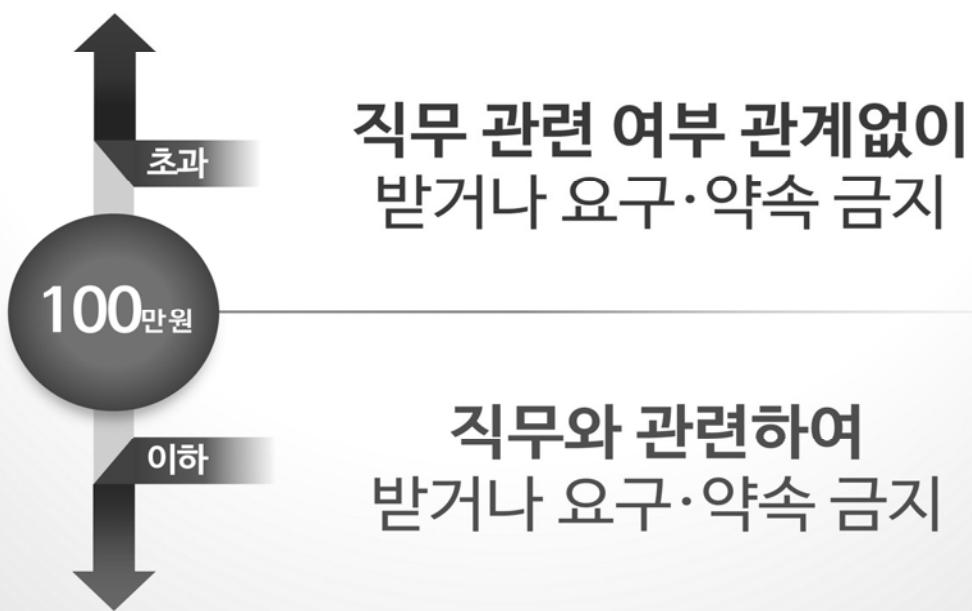
개 요	조치 내용
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 교원의 청탁을 받고 교장이 채용공고문을 수정하여 개재	직무 대리자 지정
공직유관단체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2차례에 걸쳐 해당 공직유관단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승진을 청탁	직무 참여 일시 중지 및 전보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내부 직원에게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심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특정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	전보

유형별 분석 | 부정청탁 금지

-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소속기관에 접수된 신고 46건 대비 실제 공개한 경우는 3건 → 적극적 공개 필요
- (근거) 시행령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부정청탁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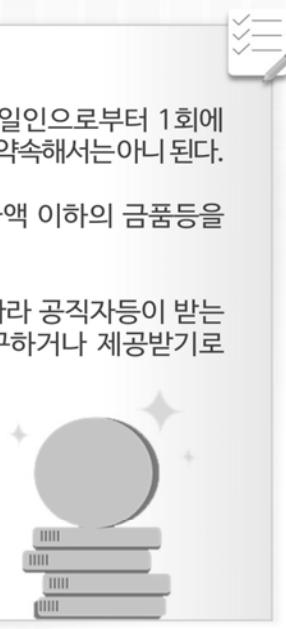
유형별 분석 |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또는 그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위반자 조○○, 조○○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 '○○'의 공연제작사인 도○○의 대표이사인 윤○○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윤○○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을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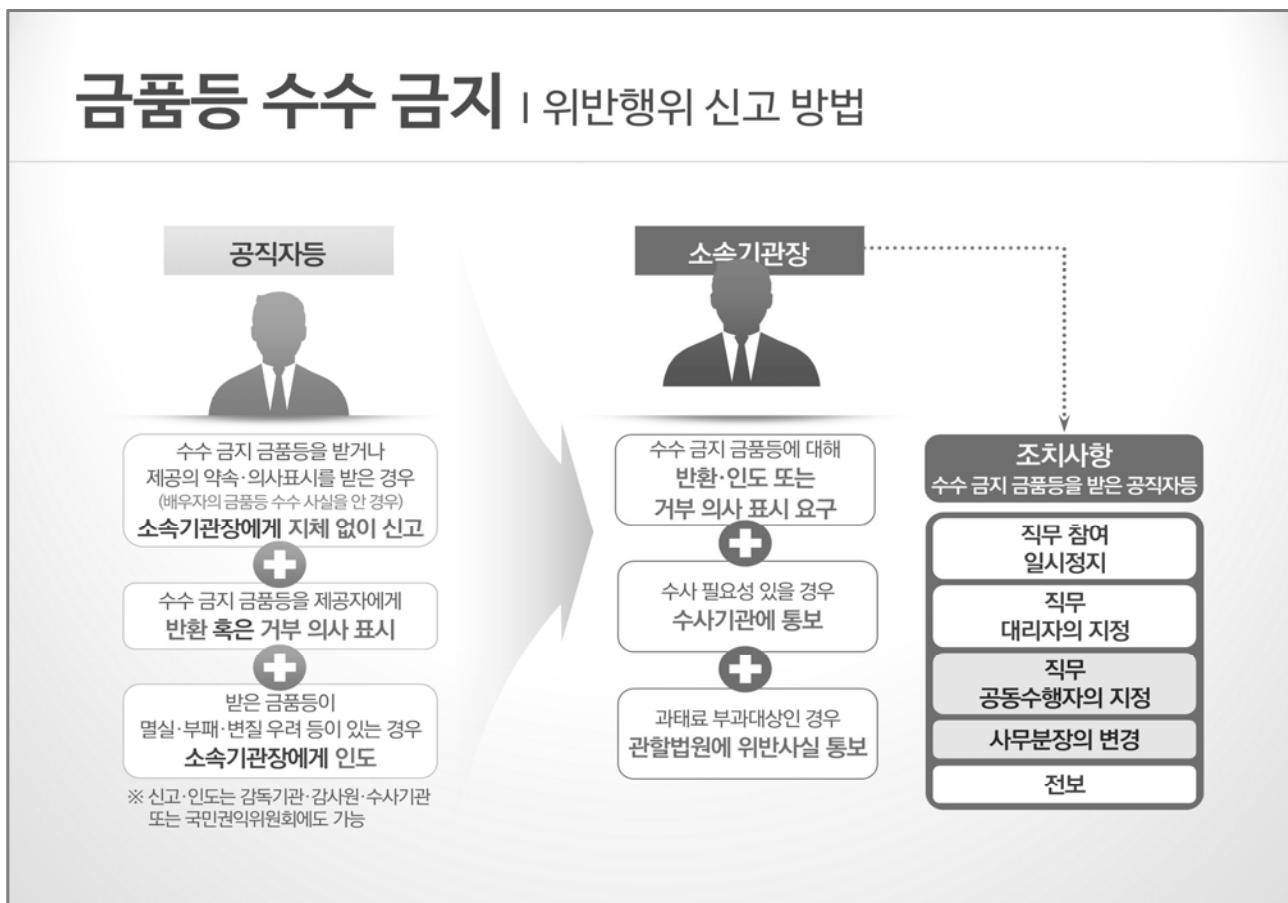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영 [별표 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직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공직자등이 자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기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유형별 분석 | 금품등 수수 금지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1,926건,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의뢰 408건, 제재* 확정 167건

*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관련 사례

개요 국공립병원 직원이 1년여에 걸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

제재 수수한 공직자 : 과태료 2배(400만원)

개요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센터의 직원이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취업사업 총괄 공직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제재 제공자 : 과태료 2배(10만원)

유형별 분석 | 금품등 수수금지

- (엄격한 처리) 예외로 허용되는 가액범위 이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 사회상규가 인정되지 않아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관련 사례

제공자	수수자	수수금품/제공액	과태료
피조사자	공무원	음료세트 1만원	3배(3만원)
관할 지역 소재 조합 이사장	조합 관할 공무원	음식물 약 2.8만원	약 2배(5.8만원)

수수자·제공자간 주고받은 금품(예시)

현금	유가증권	음식물	기타
현금	상품권, 초대권, 기프티콘	선물세트, 과일, 와인, 고로쇠물	옷, 스카프, 전기렌지, 배나무, 황금열쇠, 통기타, 화장품 등

금품등 수수 금지 | 판례

▣ 인정 사실

- 제공자 : △△기초지자체 관내 협회조합장 및 간부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 금 품 : 공직자들과 제공자들 22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총 63만 3천원을 결제
(식당의 방에서는 공직자들과 제공자들을 포함한 16명이 총 54만1천원의, 홀 테이블에서는 공직자의 수행원과 제공자 직원 등 6명이 총 9만2천원의 식사)



판 단

- 제공자와 공직자는 각종 조례 제정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위반자들과 그 외 직원들이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한 점, 주문한 음식 종류가 다른 점, 참석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나누어 구성원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반자 16명은 1인당 33,812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 각 위반자들에게 약 2배의 과태료(7만원) 부과

유형별 분석 | 금품등 수수금지

- (부적절 처리) 5가지 유형
 - 같은 기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온정적 제재

관련 사례

개요	상급자 공무원 3인은 하급자들로부터 각 24.5만원, 4.1만원, 3.8만원의 금품 수수
처리	과태료 부과 요청 없이 수수자·제공자 모두 견책, 불문경고 조치

-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비

관련 사례

개요	공무원에게 진정사건의 피신고인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택배로 제공
처리	공무원은 자진 신고, 제공자인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조치 미비

유형별 분석 | 금품등 수수금지

- 수수자·제공자 간 제재 불균형

관련 사례

개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모임 비용 명목으로 금품 50만원을 수수
처리	수수자인 공무원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제공자인 직무관련자는 과태료 부과 요청하여 과태료 3배 부과 결정

- 양벌규정 미적용으로 소속 법인에 대한 제재 미비

- 금품등 수수의 예외사유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결하거나 수사의뢰가 필요함에도 종결한 사례 발생

유형별 분석 |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

직무 관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

강의·강연·기고 등

외부강의등 신고

“대가 받지 않아도” 신고

“사전” 신고 원칙

사전신고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2일 이내 사후 신고

국가·지자체 요청 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

외부강의등 |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별표2])

-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구분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 상한액	100만원	40만원 (※ 1회 기준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외부강의등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징계처분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유형별 분석 | 외부강의등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8,409건, 과태료 부과 요청 6건, 과태료 부과 5건

관련 사례

개 요	제 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6.9월~'17.9월 중 29회에 걸쳐 1천74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과태료 30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40만원의 사례금을 초과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과태료 40만원

외부강의등 | 판례

인정 사실

- 공직자 : 공공기관 직원
- 내용 : '16.9.29.~'17.5.25 기간 동안 14차례에 걸쳐 1,070여 만원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하고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 불이행

판 단

-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500만원 부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 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 ·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사례를 통한
신고처리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사례A

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①

개요

피신고자1,2는 ○○군 ○○센터의 센터장 및 센터원(지방공무원)으로, '00. 12.경 공로연수예정인 센터원A(지방공무원)의 퇴직기념품(황금열쇠 및 케이크 등) 구입 등을 명목으로 센터 공무직 25명에게 1인 12,000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의혹이 있다.

판단

요구 행위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8호 예외사유 해당 하지 않음

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①

상황

사건을 주도한 피신고자2가 1년간 휴직 후 복직하였던 점,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법 교육이 '00. 3월경 실시된 후 '01. 12월에 계획되었던 점, 피신고자들의 교육 참석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보완점

-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였다면 …
- 피신고자들이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퇴직기념품 구입을 위한 양출에 대하여 한번만 문의하였다면 …

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②

개요

피신고자1 내지 5는 ○○공단 ○○지사 검사관들이다.
피신고자1 내지 3은 '00. 9. 10. 인허가를 신청한 A업체에 점검을 나가
A업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의 직원으로부터
○○한정식에서 개인당 2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피신고자4 내지 5는 같은 날 C업체에서 D부서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한정식에서 동일한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

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②

상황

A업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가 A업체에 대한 ○○공단의 점검사항을 대행하였던 점, 식사를 제공한 B업체 직원 및 C업체 D부서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던 점, 식사장소인 ○○한정식이 지역 접대장소로 널리 알려진 고급 음식점 이었던 점, 당일 점검을 나간 2개 지역 검사관 전원이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시

보완점

-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하고, 평소 예견되는 위반 유형에 대한 주의 또는 관심을 가졌다면 …



사례 B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①

개요

피신고자 1은 ○○ 시장이며, 피신고자 2 내지 10은 ○○ 시의회 의원들이다.
피신고자 1은 '00. 12. 20. 피신고자 2 내지 10과 간담회를 하며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 2 내지 10은 위 금액의 식사를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

확인 1. 직무관련성

피신고자 2 내지 10은 00시의 시의원들로 00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 중 00시의 시장인 피신고자 1과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①

확인 2. 금품제공 및 수수 사실 확인 A

'00. 6. 15. ~ 6. 27. 00시의회 상반기 정례회의 안건은
'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이었으며,
'00년 00시 행정사무감사도 병행

피신고자 1이 상반기 정례회 마지막 날인 '00. 6. 27. 피신고자 2
내지 8 등 35명과 함께 업무추진비로 85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여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 2 내지 8에게 1인당 2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①

확인 3. 금품제공 및 수수 사실 확인 B

'00. 12. 1. ~ 12. 20. 00시의회 하반기 정례회의 안건은
'00년도 예산안 및 '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었는데,

피신고자 1이 하반기 정례회 기간 중인 '00. 12. 18. 피신고자 2 내지 10 등
57명과 함께 업무추진비로 1,876,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여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 2 내지 10에게 1인당 3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①

확인 4. 예외사항(제2호) 해당 여부

- 「군수와 군의회 의원간 식사 제공에 관한 질의」 해석례 (2016. 11.)

일반적으로 군의원도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한
일반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와 3만원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음

다만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음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①

확인 5. 예외사항(제6호) 해당 여부

피신고자 1이 '00. 6. 27. 과 '00. 12. 18. 피신고자 2 내지 10 등에게 제공한 식사는 사전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지 않는 등 단순히 접대 목적의 식사 제공 행위로 보여지기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①

확인 6. 위원회 심사 의견

피신고자 1은 '00. 6. 27.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피신고자 2 내지 8에게 개인당 약 23,000원, '00. 12. 18. 개인당 약 3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고, 피신고자 2 내지 10은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인 ○○으로 이첩

진행 상황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 중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②

개요

피신고자1은 ○○시청 민원봉사과장이고, 피신고자2 내지 21은 ○○시청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다. 피신고자1은 '00. 12. 19. 경 피신고자2 내지 21로부터 '01. 1. 1부 공로연수에 따른 퇴직기념 선물 명목으로 980,000원 상당의 금열쇠 1개와 2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2 내지 21은 50,000원씩 각출하여 피신고자1에게 위 금열쇠 및 꽃다발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②

확인 1. 직무관련성

○○ 시청의 '00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계획에 따라 12. 15. ~ 30. 피신고자2 내지 21은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입력하였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 내지 21을 포함한 민원봉사과 일반직21명에 대한 평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1과 피신고자2 내지 21의 직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확인 2. 금품 가액

피신고자2 내지 21이 각자 50,000원씩 냈다 하더라도 '00년 12월 충순경 주무 회의시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100만원을 모금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품가액은 100만원으로 판단됨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②

확인 3. 예외사유(제8호) 해당 여부

과에서 재직중이던 일반직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직원들이 각출하여 퇴직기념 선물을 전달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 법 제정 취지가 상급자에게 98만원 상당의 금열쇠를 선물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로도 보여지지 않으며,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전보되므로 재직 하위 직원이 장래에 동일한 퇴직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하급직원들은 조직분위기로 인해 사실상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각출할 수 밖에 없는 반강제성이 있으며 직원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공직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관례이거나 사회상규라고 볼 수 없음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②

확인 4. 위원회 심사 의견

피신고자1이 '00. 12. 19.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2 내지 21이 5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금열쇠 1개 98만원과 꽃다발 2만원 등 총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고자2 내지 21은 위 금품을 제공하여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피신고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인 ○○도로 이첩

조치

조사기관에서는 조사 후 소속기관에 과태료 부과 요청토록 통보
소속기관에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금품등 수수 확인 사례 ②

관할 법원 판단

피신고자1의 공로연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금원을
각출하여 퇴직기념품을 마련한 점, 기념품의 제공시기가 피신고자1의
직무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으로 보이는 점, 피신고자1이 기념품을
마련하는데 누가 참여하고 얼마씩 각출하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 시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설명자료

국가청렴정보시스템 1단계 사용 설명자료

1. 시스템 개요

☞ 공공 청렴e시스템((구)제로미)을 통해 이첩·송부 사건 처리, 부패영향평가 이행 관리, 시책평가 자료제출 및 결과조회,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등 각종 반부패 업무를 처리 및 조회

웹 주소 : <http://ep.clean.go.kr> 헬프데스크 : 1811-8338

1-1. 업무 역할 정의

국민권익
위원회

기관
운영자

기관
사용자

- 신고 사건 이첩·송부
- 반부패 자료 제출 요청
- 반부패 정보 등록

- (기관 내) 사용자 권한 부여 및 해제
- 통합 접수
- (기관 내) 처리 지연 및 이행 현황 관리

- 권한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현황 관리
※ 부패영향평가이행 관리 등
- 권한에 따른 자료 조회

1-2. 메뉴 구조도

부패신고사무	조사·평가	비위면직자 조회	마이페이지	검색서비스	기관운영자	청렴e소개
통합접수	부패공직자 행동강령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나의업무 현황	사건검색	기관부서관리	공지사항
사건처리	비위면직자 관리			자료검색	기관사용자관리	정보 공유방
이행관리	시책평가			통합검색	사용자권한관리	
신고자 보호조치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상금 관리	실태조사 -공익신고 운영실적 -부패방지 교육실적					

2. 업무 요약

2-1. 청렴e시스템 기관운영자 업무

업무명	업무설명	메뉴위치
통합접수, 담당자 배정	• 권익위에서 요청된 반부패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을 접수 및 담당자 배정	부패신고사무 > 사건처리 >
기관 사용자 권한부여	• 해당 기관의 시스템 사용 신청자 승인 및 해제	기관운영자 > 기관사용자 관리
기관 사용자 권한 관리	• 해당 기관의 사용자에 대한 권한 추가 부여 및 해제 등 권한 관리	기관운영자 > 권한설정 관리

2-2. 청렴e시스템 일반사용자 업무

2-2-1. (부패신고 사무) 신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 이첩·송부·사건 처리, 보호에 대한 조치 실적 제출 등을 처리

업무명	업무설명	메뉴위치
신고 관련 자료 제출	• 부패 · 공익 등 신고 관련 권익위의 자료 요구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	부패신고사무 > 사건처리 > 사건처리
신고 관련 조사 · 조치결과 제출	• 권익위에서 부패 · 공익 등 신고 관련 이첩 · 송부 한 자료에 대한 연장신청, 조사 및 조치결과 제출	부패신고사무 > 사건처리 > 사건처리
조사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관리	• 권익위에서 부패 · 공익 등 신고 관련 이첩 · 송부 한 자료 처리지연 사유 및 향후 계획 등 반기별 점검 관련 이행실적 제출	부패신고사무 > 사건처리 > 사건처리
신고자 보호조치	• 권익위에서 보호 관련 조치 요청한 사항에 관련 자료 제출	부패신고사무 > 보호조치
신고자 포상 추천	• 해당 기관에서 신고 접수 · 처리한 신고자에 대하여 권익위에 포상 대상자 추천	부패신고사무 > 신고자 보상금 관리
사건검색	• 신고사건에 대한 내역을 조합검색	검색서비스 > 사건검색

2-2-2. (조사·평가)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제출, 비위면직자 관리,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이행실적 등을 처리

업무명	업무설명	메뉴위치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실적 제출	•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제출하고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수정	조사·평가 > 부패공직자행동강령
비위면직자 관리	• 비위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변경,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검토 의견 제출, 취업제한자에 대한 기관 이행조치 등 비위면직자를 관리	조사·평가 > 비위면직자 관리
시책평가	• 시책평가 관련 실적 보고서 및 제출자료 보완, 이의 제기 등을 처리하고 평가결과를 확인	조사·평가 >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의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등을 처리	조사·평가 >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 공익신고 운영실적 및 부패방지교육 운영 실적을 입력	조사·평가 > 실태조사

2-3. 청렴e시스템 사용자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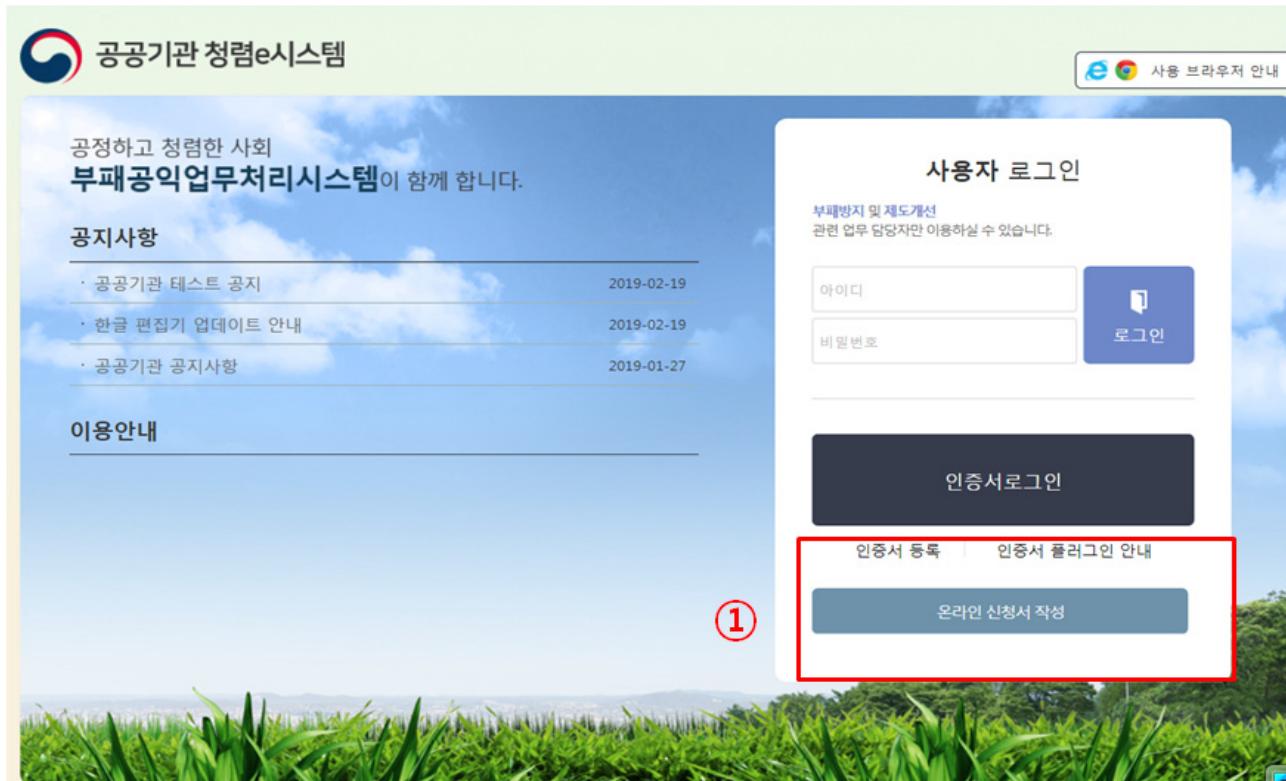
업무명	업무설명	메뉴위치
나의업무화면	• 권한에 따라 처리 요청된 반부패 업무 확인 및 처리 지연 현황 등 나의 해야 할일 조회 * 기관운영자는 기관의 전체 반부패 업무에 대한 지연 현황 등 조회	첫 화면
통합검색	• 청렴포털에 게시된 반부패 정보에 대하여 첨부 문서 까지 통합 검색하는 화면	검색서비스> 통합검색

3. 시스템 권한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승인요청→승인→로그인→인증서(GPKI/NPKI 등) 등록
: 승인의 경우 기관운영자는 권익위에서 승인, 기관일반사용자는 기관운영자가 승인

3.1. 온라인 신청서 작성

- ①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선택하여 신청화면(팝업)을 불러 옵니다



3.2. 승인 요청

- ② 기관운영자의 경우 권익위에 공문 수신기관은 반드시 공문(사용자 계정 ID, 성명, 부서명 기재)으로 승인을 요청

※ 공문 미수신 기관은 내부 결재받은 신청공문을 반드시 추가로 첨부한 후 '저장 및 승인요청' 버튼을 선택

사용자권한 부여 · 해지 신청 - Chrome

사용자권한 등록,해지 신청

신청구분 등록 해지

신청정보

사용자계정ID	<input type="text"/>	중복체크	성명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text"/>	
소속기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E-Mail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부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직급(직위)	<input type="button"/> <input type="button"/>			
사용자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기관운영자	<input type="radio"/> 기관일반사용자	- 기관운영자는 각 기관별로 1인만 신청가능 함 (필요시 변경신청)				
해지사유	<input checked="" type="radio"/> 타기관발령	<input type="radio"/> 퇴직	<input type="radio"/> 전보	<input checked=""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사용권한 (등록 신청시 필수선택사항)

전체선택

사용권한 (복수선택 가능)		사용권한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신고사건 처리	<input type="checkbox"/> 처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결재권자	<input type="checkbox"/> 처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보호,보상	<input type="checkbox"/> 처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결재권자	<input type="checkbox"/> 공익신고 운영실적
<input type="checkbox"/> 부패영향평가	<input type="checkbox"/> 처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결재권자	<input type="checkbox"/> 행동강령 운영실적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 시책평가	<input type="checkbox"/> 처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결재권자	<input type="checkbox"/>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위반자
<input type="checkbox"/>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input type="checkbox"/> 처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결재권자	<input type="checkbox"/>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처리지연 상황 알림 등 업무처리 관련 SMS통지 동의 여부 동의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문 첨부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신청시 공문을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공문 첨부 선택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취소

②

3.3. 승인

- ③ 승인요청 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등록된 휴대전화로 승인내역이 문자(SMS)로 사용자 아이디가 통보됩니다.

3.4. 인증서 등록

- ④ 최초 접속시 SMS로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 및 각 공공기관에 맞는 인증서(GPKI/EPKI/NPKI)를 반드시 등록하시고 이후 로그인 시는 해당 인증서를 통하여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4.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경 사 항
업무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입력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등 입력 ■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 청렴교육 실적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의견 등록, 실적 입력 및 추가 자료 제출, 평가보고서 조회 등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등 입력 ■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 청렴교육 실적 입력 ■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이행결과 입력·관리 ■ 비위면직자 관련 직무관련성 자료 제출 및 이행관리 등 ■ 이첩송부 및 보호·보상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리 등 ■ 공익신고 운영 실적 입력
관리기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권한에 따른 해야 할 업무를 나의 업무 현황으로 제공 ■ 통합검색 서비스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에서 사용자 권한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는 관리자 권한을 청렴업무 담당자에게 부여 ■ 세부 기능별 사용자 권한은 각급 기관 담당자가 부여 ■ 이용자가 90일 이상 미접속시 권한 차단·중지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소개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2단계 구축 사업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신고 등 소관의 반부패 업무를 처리,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부패 방지 업무처리 시스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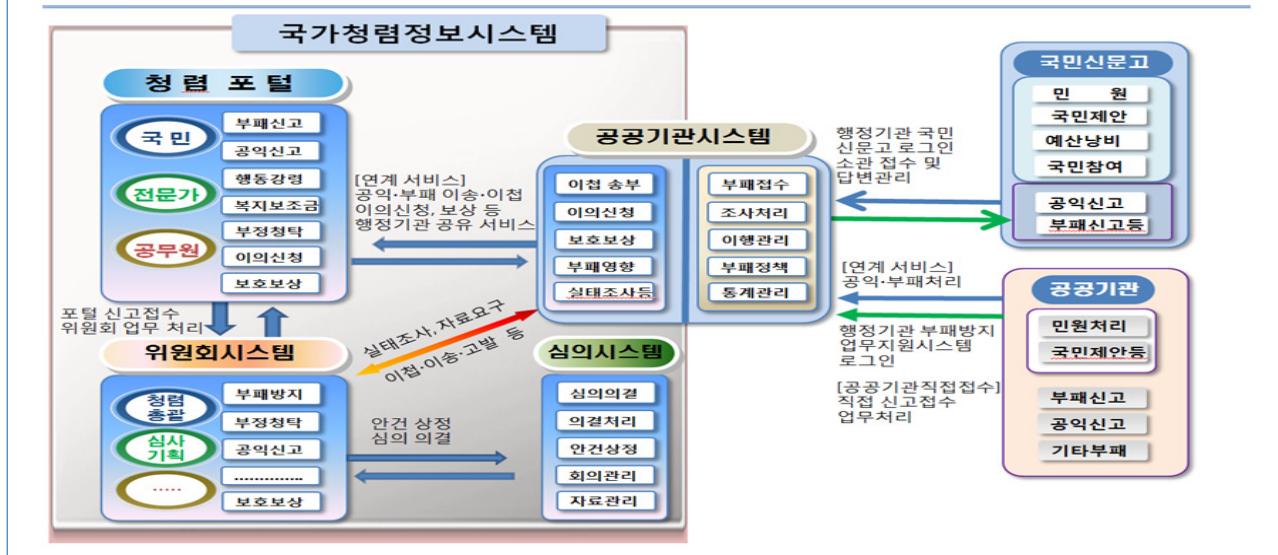
- 국민들은 ‘청렴포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부패, 공익,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및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검색·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청렴e시스템’을 통해 사건 유형별 지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부패방지 업무처리 절차 진행
- 권익위는 ‘청렴e시스템’을 통해 반부패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반부패 분석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 가능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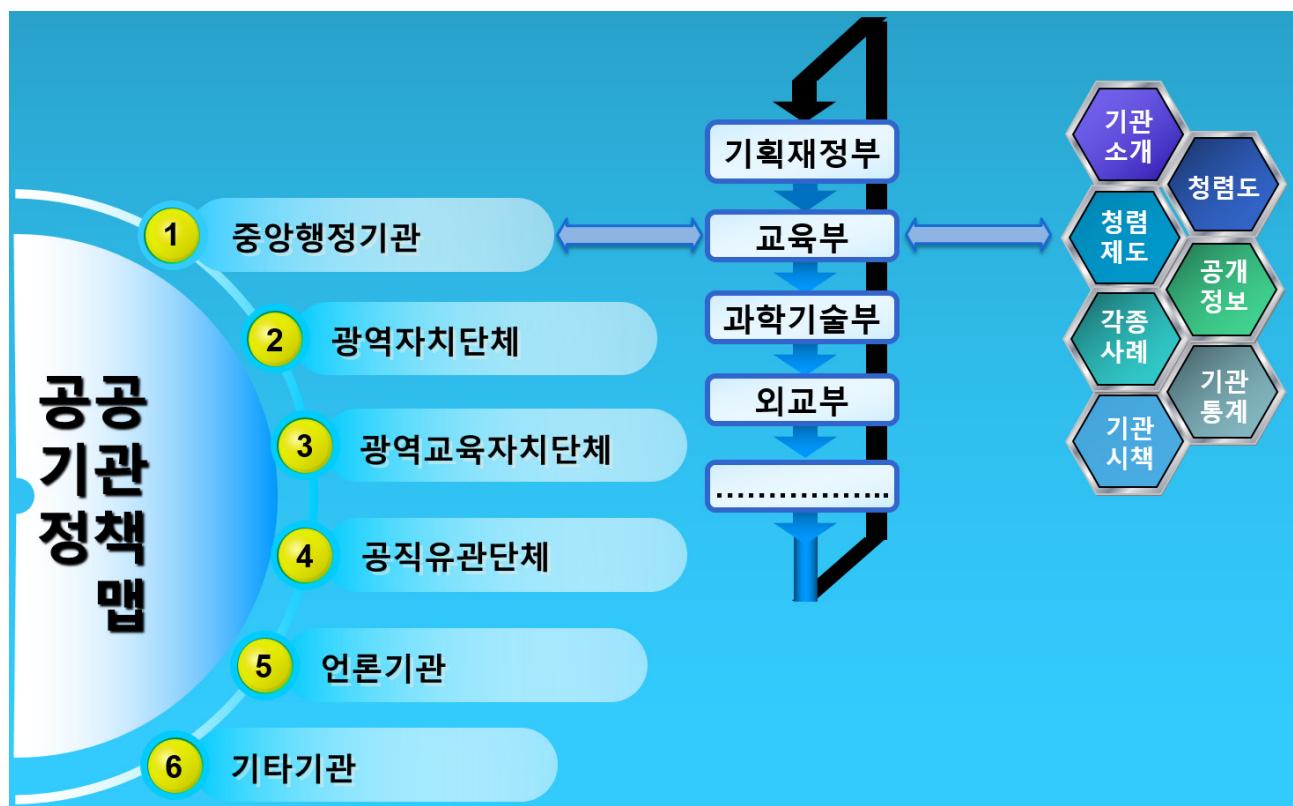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의 환류가 중요하나 관련 시스템 미비
- 이에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해 달라는 요구 등이 제기

□ 추진내용 (붙임)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성도 >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및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검색·활용 할 수 있도록 반부패 서비스 제공
 - (신고접수) 공공기관의 신고에 대해서도 원스톱 신고·신청 및 자동 알림 서비스를 마련하고, 축적자료를 DB화하여 신고도우미 기능 등 제공
※ 신고유형을 모를 경우 간편 신고 작성 제출 시 시스템이 신고 유형을 자동 분류하여 제공하고 유형별 부패·공익 사례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도록 지원
 - (보호보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보호신청이 가능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이력 관리·조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의 신속성 강화 및 중복지급을 방지
※ 보상금 및 보호 신청 건에 대해 권익위, 공공기관 간 공동 DB구축을 통해 신고 접수, 진행현황, 조사결과 등을 공유 활용
 - (반부패정보) 공공기관(청렴e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손쉽게 공개할 수 있고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원하는 반부패 정보 공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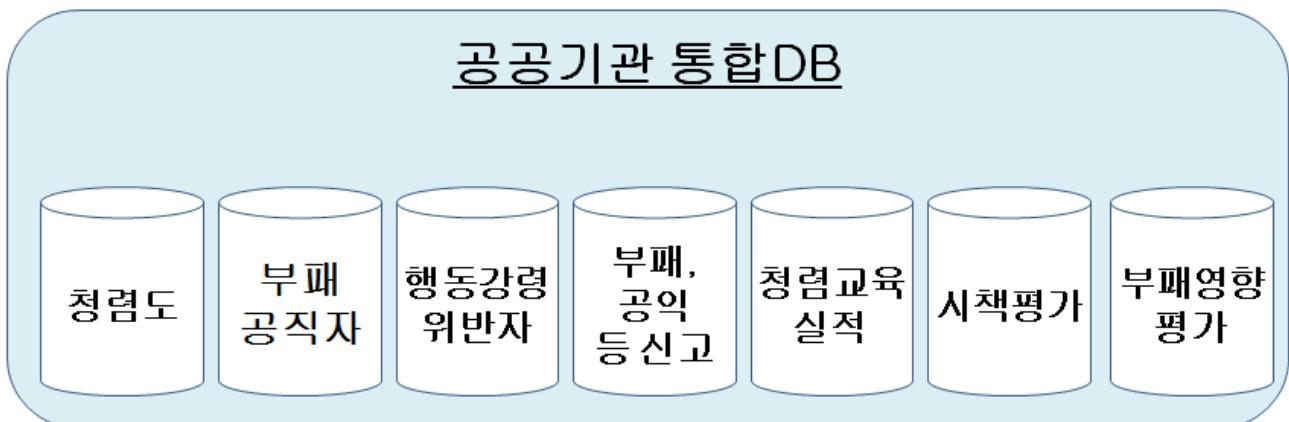


- 공공기관으로 제출되는 서면 신고건 및 자체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개별 관리하던 신고사건에 대한 통합·활용체계 구축
 - 업무처리 및 관리사항에 대한 알림기능을 통해 조사관의 사건처리 연속성 보장
※ (참고) '19년말 신고 통합 및 보호·보상 연계 관리를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상의 공익 신고 기능을 폐지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으로 신고 기능 일원화'

- 신고 사건에 대한 지식서비스 제공 및 신고처리 전 과정(신고운영현황 등)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집계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 수행을 위해 반부패 정보의 분석·통계·검색 기능 제공

- (권익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청렴도 등 비교 및 부패유형별·연도별·기관별 상호 추이 등 분석
- (공공기관) 시스템 입력·처리 자료에 대하여 기관유형별, 연도별 추이 분석 및 키워드 분석 등(단계적 추진 '19년 통계기반, '20년 분석기반)



□ 추진일정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3단계 구축 관련 의견수렴 ('19. 4월)
- 2단계 실무추진단 구성 ('19. 5월)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착수 ('19. 5월)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설계안 관련 의견수렴 ('19. 7~8월)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완료 및 보급 ('19. 12월)

불임**국가청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구분	현재 (AS-IS)	구축 시스템 (TO-BE)
접수 신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익위 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접수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에 온라인 신고, 보호, 보상 접수 기능 제공 권익위 제작 신고 사례 검색 메뉴 등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가능 권익위 보호신청 프레임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가능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서면 접수 및 위탁 신고 창구 등에 대한 통합 처리 기능 제공 신고 처리 시 개인정보 자동 변환, 블랙 마킹 등 지원
사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익위 이첩·송부 및 공공기관 자체 신고 사건에 대한 통합 사후관리 기능 제공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신고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보호 모니터링 기능 제공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신청건마다 관련 기관 등에 조사 결과 등 자료 요청 및 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익위 보상 자료 요청건에 대해 별도의 자료 제공 없이 공동 DB를 통해 정보 제공 가능 공공기관 보상금 신청 접수건에 대해 공동 DB를 통해 권익위 보상금 지급여부 조회 가능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검색, 활용 불편 반부패 정보가 개인 PC, 공문, 시스템 등에 산재하고 있어 정보 검색, 활용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고 사례 등 시스템을 통한 지식서비스 제공 반부패 정보가 모두 시스템으로 관리 청렴도, 시책, 부패공직자, 신고 등 반부패 정보에 대한 등에 대한 공공 기관 맞춤형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운영 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와 민원을 같이 접수·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 등 불가 신고 운영 실적을 수기로 집계하여 제출하고 있어 자료 제출에 불편 범국가적 신고 통계 집계 및 자료 분석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별 신고의 통합접수 기능 제공으로 신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산출 가능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운영현황 자동 집계 및 제출 신고에 대한 종합적 통계 집계 및 정보 분석 가능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강원지역)

국가청렴정보시스템 Q & A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공동활용 국가청렴정보시스템 Q&A

심사기획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법 등 제정에 따라 신고 접수·처리에 있어 편리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속적 요구가 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등에 따라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까지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중 2019년도 제공되는 공공기관업무처리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영역을 유지시키며 다음 서비스를 제공함, 신고인이 해당 공공기관에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고서 등을 제출한 건을 실시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제공하고,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는 신고서 등이 제출된 경우 쉽게 알 수 있도록 SMS, eMail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신고에 대한 유사 처리 사례 검색, 위반유형 식별 등에 대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 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기능 제공으로 부폐수의 환수 등 사후관리 누락 방지와 2019년 청렴도 등 반부패 정보를 ‘공공기관 업무처리 시스템’에 절차 설계 완료 후, 2020년 자체 신고 접수 건수 등 다양한 반부패 정보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하면서, 개별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가질 수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 서

1. 국가청렴정보시스템 도입의 강제 여부
2.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공동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
3. 개별 온라인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4.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별 신고창구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은
5. 신고 접수 창구 이용 시 권익위에서 사건 조회 등이 가능하지 않은지
6. 개별 공공기관에서 접수받고 있는 신고접수 창구 기능 제공도 가능한지
7. 공공기관에게 제공되는 편리성 및 이점
8.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편리성
9. 개별 공공기관들의 별도예산 소요 여부
10. SMS 서비스 등에 따른 비용 부과는 언제 발생하며, 얼마인지
11. 보상제도 이용 기능 신청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
12. 사례 검색 시스템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
13. 본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제로미와 관계는

1. 국가청렴정보시스템 도입의 강제 여부



공공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들이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모든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이나, 강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공익신고, 청탁금지 위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접수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관리 할 체계적 시스템 미비로 사후관리 누락 우려 등 관리 부실 및 축적된 반부패 정보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이 곤란할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개별 구축에 따른 예산중복의 방지, 시스템구축 경험을 활용한 개발 효율성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목표로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별 공공기관에서 이후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경우 중복 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스템 보급에 따라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상 등 처리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신고인” 관련 보상금 지급 여부를 상호 확인 신속하게 처리는 물론 실태조사 등 취합시에도 실태조사서 기간을 입력하면 바로 조사서가 작성되고 위원회 통보로 해결 하는 등 간편 행정으로 단순 반복적인 조사서 작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 사례 등을 업무에 활용하여 284개 공익 유형을 자동분류해 주는 등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지식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공동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공동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개별 소속기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개별 공공기관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는 기관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소속기관을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권한을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은평구에서 소속기관을 은평구 관리자가 직원과 소속직원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사무국

3. 개별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Q

기존에 다양한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A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더 이상의 기능이나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청렴포털에 신고 창구 연계를 통해 신고자가 청렴포털에서 기관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게 기능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고접수 창구는 있으나 신고 유형에 따른 위반유형 분류 및 수사의뢰 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 등 체계적 관리 기능이 없는 공공기관에서는 신고 접수 창구는 다양하게 유지하면서 접수 관리 기능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스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국가청렴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시려는 경우에는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전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구축되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수집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부패방지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의 기 구축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것이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익명신고 시스템 및 개별 신고 접수 시스템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신고 접수 건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처리 및 관리 할 수 있는지

Q

익명신고 시스템 및 개별 홈페이지 건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처리 및 관리 할 수 있는지

A

공공기관 부패방지 업무처리 시스템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가져와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을 ‘공공기관 청렴e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시스템’은 원하는 경우 표준 체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축되는 시스템입니다.

5. 개별 공공기관에서 부패, 공익 등 외에 접수받고 있는 신고접수 창구 기능 제공도 가능한지

Q

개별 공공기관에서 접수받고 있는 신고접수 창구 기능 제공도 가능한지

A

공공기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부패’의 종류를 세분화 하여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청탁’을 세분화 하여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개별 공공기관에서 고정된 명칭(부패, 공익 등)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접수받고 있는 신고접수 창구 명칭 사용 등 유연하며 확장성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6. 신고 접수 창구 이용 시 권익위에서 사건 조회 등이 가능하지 않은지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신고 접수 창구 이용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신고사건을 조회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구성 됩니다.

공공기관의 시스템 영역에 대한 접근은 공공기관 관리자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시스템 작업은 사전 통지하에 추진되고 작업 이력은 공공기관 관리자의 모니터링 대상에 뜨게 됩니다.

따라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개별 신고사건에 대한 조회가 불가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공기관에 신고 접수 후 권익위에 보호, 보상 신청한 건 및 전체 통계만 공동 DB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동구역”에 두어 상호 보상 등 참조시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록은 이력으로 남아 누가 언제 정보를 참조하였는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소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 누가 참조하였는지 이력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공공기관에게 제공되는 편리성 및 이점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어떤 편리성 및 이점이 제공되나요?



첫째,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은 신고자 보호 가이드에 따라 신고 사건에 대한 접근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개인 정보의 암호화 관리, 신고자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등 강화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식DB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식DB는 절차 및 관리 사항안내, 위반유형 식별 등 전반적인 신고 업무처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잘 알지 못하는 담당자라 하더라도 ‘신고처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음절차 안내 흐름 지원 서비스를 대하면 쉽게 신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신고 유형별 주간·월간·연간 통계 등 각종 통계를 실시간 원하는 양식으로 조회하여 활용,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익신고 운영 실적 등 자료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작성 없이 손쉽게 자료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접수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일일이 당사자에게 진행 사실을 알려줄 필요 없이 정해진 절차 단계에 대하여 SMS로 자동 통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2020년 공공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 사건 등에 대한 키워드 및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통합한 분석 서비스로 반부패 정보에 대한 정책환류가 가능합니다.

8.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편리성 및 이점



신고자에게 어떤 편리성 및 이점이 제공되나요?



메일 등으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신고를 접수 받는 공공기관에 최신 사이버 침해에 안전한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다양한 공공기관에 안심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홈페이지 등에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19년 오픈하는 청렴포털에 신고창구 연계를 통해 신고자가 청렴 포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해지며,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외에 신고 사례 검색 및 보호신청 등 신고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접수된 신고서에 대해서도 처리 단계별로 접수 사실과 처리 단계를 SMS, 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주소 변경, 신분공개 동의 변경 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권익위에 보호, 보상 신청 시 통합 DB를 통해 신고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신고 관련 이력을 활용하여 보호, 보상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 관련 중복 정보 입력 없이 편리하게 보호,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보호, 보상 신청건에 대한 사건 추적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보호,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9. 개별 공공기관들의 별도예산 소요 여부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개별 공공기관들이 별도 예산을 배정 해야하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은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이용하기에 기본업무인 ‘공통부분’과 공공 기관별 특성 부분을 잘 구분하여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마련하여 공공기관별로 추가 개발하지 않고 유지보수 수준에서 원만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을 위원회에서 기술 지원하고 기관에서 내부 연계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10. SMS 서비스 등에 따른 비용 부과는 언제 발생하며, 얼마인지?



SMS 서비스 등에 따른 비용 부과는 언제 발생하며, 얼마인지?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진행단계별 정해진 절차에 대하여 SMS 통지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 부패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확보에 따라서 무상 지원 또는 유상지원이 될 예정이며, 관련 서비스 이용 시 접수, 처리 등 단계별 통지 시 단문 8원, 장문 27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 보상제도 이용 기능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



보상제도 이용 기능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요?



보상제도 이용 기능은 자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신고건에 매칭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자체 보상제도가 없는 기관의 경우 보상신청을 위원회로 연계 시켜 접수 처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원회로 공공기관에 신청한 사건을 보상 신청하는 것으로 접수되어 처리 됩니다.

12. 사례 검색 시스템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



사례 검색 시스템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요?



신고 사례 검색 시스템은 신고자 및 공공기관 담당장가 신고 및 처리 시 유사사례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외에 상담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위원회 처리건을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처리사례 1,000건을 제작하였으며, 내년 공공기관 신고 유형별 사례 1,000 건을 추가 제작하여 기존 상담 사례 등에 추가 하여 제공 예정입니다.

13. 본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



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요? 제로미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본 시스템은 제로미를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부패신고 유형별 신고처리과정 및 이첩관리와 반부패 시책, 청렴교육 실적, 공익신고 운영 실적, 행동강령 위반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반부패 업무 처리 절차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청렴도, 공공기관의 자체 신고 접수 처리 절차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보를 ‘부패방지 공공기관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용신청을 한 기관에 대하여 ‘19년 자체 신고 접수 창구 여부 등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 후 ’19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년도부터는 공공기관별로 시스템에 통합된 반부패 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반부패 분석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처리방법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바로 알고 제대로 처리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 I.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정의?
- II. 신고 및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신분노출 사례
- III. 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 IV.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 V.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1.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은 무엇일까요?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1 (가목)

-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기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나목)

- ❖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다목)

-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침해 행위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국민의 안전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
유통

공정한 경쟁



LPG
가격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행위 6대 분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1. 건강분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학교급식법

-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약사법

-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 위생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2. 안전분야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에어컨 냉매ガ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해사안전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3. 환경분야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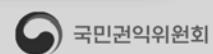
악취방지법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4. 소비자이익 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중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하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축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5.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법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성 민원이란 ?

- 각종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부패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민원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주의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에 해당

비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들어온 신고 중 피신고자를 특정하여 증거를 첨부한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등도 모두 공익신고에 해당 (일반민원과 공익신고의 차이는 형식과 창구가 아닌 신고내용)



2. 신고 및 민원 처리시 개인정보, 신분노출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1)
신고성 민원
숙지 미흡

피신고기관에
신고자 정보
고의 누출

- ▣ A기관은 OO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접수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하였고, 민원인은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받음
- ▣ 철도공사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민원에 대해 B공단이 민원인의 동의없이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민원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민원인은 인권위에 개인정보 관련 진정을 제기
 - ☞ 신고성 민원 접수 후 담당자가 공익신고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 처리
- ▣ C공무원은 어린이집 관련 내부 공익신고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누설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은 제보한 교사를 색출해 해고하였음
- ▣ D공무원은 사학비리 제보 내용과 제보자 정보를 해당대학 관계자에게 알려주었으며,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내부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함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부주의

- ▣ 소청위는 OO교사의 승진탈락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E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E교육청은 이와 관련 OO교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청위에 제공, 소청위측도 민원인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소청 신청인에게 전달함
- ▣ F공무원은 OO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하던 중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노출
- ▣ G공무원은 모래섞인 시멘트 사용 사실을 신고한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내부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신고자 전화번호를 노출함
- ▣ H교육청은 예산부적정 사용 관련 소청심사청구 답변서 작성을 위해 조사보고서를 보내달라는 학교의 요청에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그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송달됨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니 유출에 주의하라는 안내만으로는 신고자의 신변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판례)

(유형 3)
수사의뢰

- ▣ I공무원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함

(유형 4)
소송관련
문서제공

- ▣ J기관은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신고자의 변호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제공
- ▣ K기관은 공익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익신고와 해당 소송이 관련이 없음에도 신고자가 해당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실을 기재한 내부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5)
보도자료
및
언론유출

- ▣ L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관련 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OO 원무부장의 신고'라는 신고자가 유추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남
- ▣ 주민지원사업비 관련 민원에 대해 M환경청이 OO시의 요청에 따라 내부결재 문서(민원내용과 민원인 정보 포함)를 OO시에 제공하고 시는 이를 언론기관에 유출함

위반 시 처벌조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의 나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3. 부패·공익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부패신고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누구든지
(내·외국인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기재
-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제시

신고방법

- ✓ 방문·우편
- ✓ 팩스 044-200-7972
-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 전화(110 또는 1398) 상담만 가능

일반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수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기재
- ✓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첨부

신고방법

- ✓ 부패신고와 같음

비실명 대리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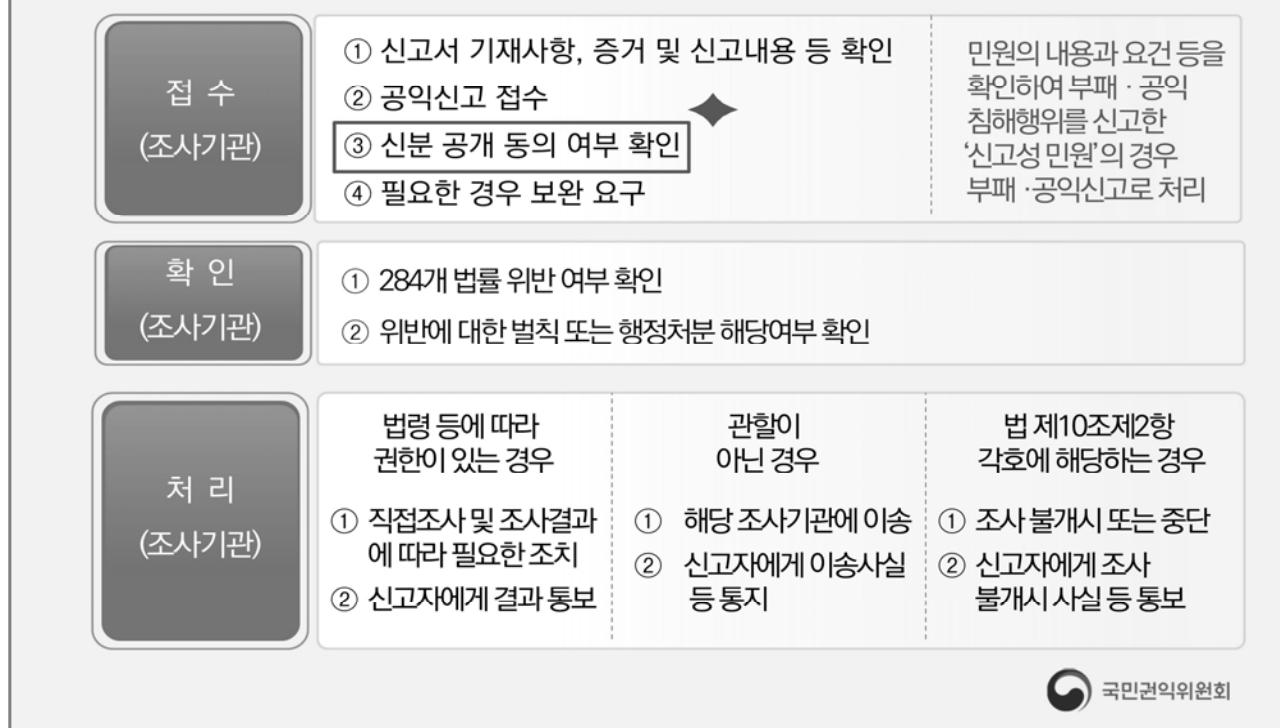
- ✓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

누구든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행정감독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국회의원
-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국민권익위원회

I. 조사기관 자체 접수 공익신고 사건 접수·처리 절차



(주목!) 일반민원의 공익신고 전환 가능

- 민원이 내용상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민원접수·담당자 지정·민원처리 단계에서 각각 '공익신고'로 전환 가능

< 일반민원 → 공익신고 전환 화면 >

The screenshot shows the 'Public Interest Complaint Conversion' interface, which includes two main sections: 'Conversion of Public Interest Complaint' and 'Conversion of Public Interest Complaint Submission'.

① 민원 접수시 공익 신고 전환

【공동조사】
민원번호: 1000-0000-0000-0000
민원유형: 민원
신고전화: 010-XXXX-XXXX
신고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신고유형: 보상청구
보상청구: ① 저작권침해 ② 출판권침해 ③ 저작권침해
※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등
※ 출판권침해: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등
※ 저작권침해로 결정 시, 저작자의 저작권 등의 소유가 확인됩니다.

② 민원 처리시 공익 신고 전환

※ 한글판의 거래경향을 빙기나 동네마트의 고용현황을 다룬 제출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 국민참여제호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한국처리법 시행령' 제17조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 않도록 부서별 및 이송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자세히 보기】
부서별자료 | 담당부서자료 | 접수자문 | 전문가 | 민원처리법 | 민원처리법 | 담당부서 |

【민원】
신고전화: 010-XXXX-XXXX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법정민원 ② 관리민원 ③ 경비민원
④ 기타민원 ⑤ 고충민원

【화면 예시】
[화면 예시] 화면 예시
[확인] [취소]

II. 권익위 이첩 · 송부 공익신고 사건 접수 · 처리 절차

처 리
(조사기관)

- 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③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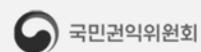
다른 기관에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권익위와 협의
하여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후속조치요구
(권익위)

- ①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품회수 등)
- ② 재조사 요구(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조 치
(조사기관)

- ① 의견제시, 재조사 요구에 따른 조치
- ② 권익위에 결과 통보



III. 부패 · 공익신고(신고성 민원) 처리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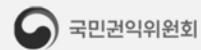
비밀보장

준 수

개인정보

보호

- ✓ 신고자, 피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 · 공개 · 보도 금지
- 신고자(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 피신고기관에게 전달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누설 금지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 민원인이 민원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민원내용에 개인정보, 고소 · 고발성 제보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공유로 전환
- 온나라 등에서 생산한 문서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개 되므로, 민원문서 기안 시 제목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 민원내용 및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공람 및 방지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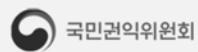


III. 부패 · 공익신고(신고성 민원) 처리시 유의사항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안내
 -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리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처리결과통지시 신고자에게 <보호 · 보상 제도 안내문> 반드시 제공
 - ☞ 공익신고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의무규정 신설(17.10월 시행)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범위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비밀보장	성명, 주민등록 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자·협조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익 조치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부당한 인사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명단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결과 공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범위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익 조치 발생시 권리위가 보호조치결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행강제금
신고자 책임감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 발견시 형·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공익신고 금지·제한하는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무효■ 손해배상 청구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변보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권리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가능
신고방해·취소강요 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 취소 강요 금지



국민의 나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4.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비밀보장

신변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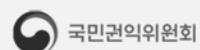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



신변
보호
방법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시동행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 형·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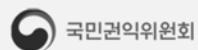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형벌·징계·행정처분하는 경우 징계권자, 처분권자는 권리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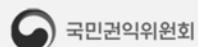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보호조치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켜 드립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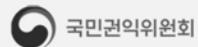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 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 처분액의 4~20%를 지급 (최대 3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	공익신고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 (이사비, 소송비, 치료비 등)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 (친족, 동거인)



(참고)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제도 보호, 보상 비교

부패신고		공익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직자가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284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감사원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보상·포상 대상은 아님)	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및 기업 • 소관 행정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신분비밀보호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 • 보호조치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	제재 수준	• 신분비밀보호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별금 • 보호조치 불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
•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통고처분 제외) *상한액:30억, 최저한도:없음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30억, 최저한도:20만원
•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지급 * 상한액:2억	포상금	•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상한액:2억

국민의 나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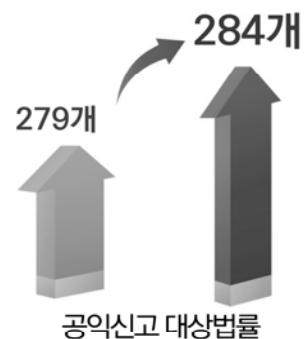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확대

▶ 대상분야 확대 (법 제2조)

* 기존 5대 분야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신고대상 법률 추가(별표)

*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추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지원 강화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법 제17조)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법 제20조)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법 제 23조)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지원 강화

▶ 긴급 구조금 제도(법 제27조)

-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법 제29조의2)

-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지원 강화

▶ 벌칙 강화(법 제 23조)

위 반 행 위	기준	개정안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시행령 제22조)

-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지원 강화

-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법 제8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 하도록 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강화
- ▶ 이행강제금 상한금액 상향 조정(법 제21조의2)

내용	기준	개정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2천만원	3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2년 이내	이행 시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더 좋은 세상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Memo



Memo



Memo

